

## 4. 都市計劃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제13368號 1991. 5. 11

도시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제 6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동차 및 중기 검사시설

제 3조제 1 항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동차정류장

    가. 버스정류장

    나. 트럭정류장

제 7조제 2 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환경계획

제 7조의 2 제4호를 동조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호(종전의 동조제4호)중 “제3호”를 “제6호”로 한다.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 지정되거나 항만법 또는 어항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이 항만구역 또는 어항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해당 시·읍·면의 도시계획 구역의 변경결정

5.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중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결정  
(폐지의 경우를 제외한다)

6.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제1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6항중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을 각각 “당해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16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설계지구: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제58조의 제목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의 조직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7인”을 “9인”으로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는 시는 모든 시로 한다. 다만, 동일한 도시계획구역안에 2이상의 시가 있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시가 이를 공동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군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시도시계획위원회)** ①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이상의 시가 공동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2인까지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당해 시의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시의 부시장이 된다. 다만, 2이상의 시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인구가 많은 시의 시장 및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시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제58조의2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1조의 2 및 제61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1조의 2 (시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회) ①시도시계획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법 제72조제2항 및 이 영 제58조의 규정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61조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려하지 아니하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2.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국·공유재산의 처분)** ①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은 그 재산을 취득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2. 다른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외의 재산  
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  
법에 의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하여 시장이 도시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미관의 증진과 도시의 기능발휘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설계제도를 도입하며,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의 전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 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도시계획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함(영 제7조의2제4호 내지 제6호).
- 나.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도시설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16조제1호).
- 다.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해당 시의 도시계획안을 심의하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시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하여 시장이 도시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합리성을 높이도록 함(영 제59조 및 제61조).
- 라. 재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게 된 대지 및 건축시설을 다음의 순위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그외의 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영 제68조).
  1. 해당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에의 양도
  2. 다른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법제처 제공〉